

개인간병인의 고용주로서의 책임 인지서

Acknowledgement of My Responsibilities As The Employer of My Individual Providers

본인은, 보건사회부(DSHS)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개인간병인(IP)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했을 경우 해당 개인간병인의 고용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 유자격 개인간병인을 심사하고 고용할 책임.
- 본인 개인간병인의 일과와 활동을 감독할 책임. DSHS 와 계약 하에 일하는 본인의 개인간병인이지만 DSHS 에서 본인 개인간병인의 일과와 활동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 개인간병인이 본인을 위해 직접 간병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할 보호 장갑을 제공할 책임
 - Apple health(메디케어)로부터 매월 200 개의 장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 달에 200 개의 장갑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Amerigroup, Community health Plan of Washington, Coordinated Care Corporation, Molina Healthcare of Washington, Inc.,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에 해당하는 Apple Health (메디케어) 관리 수혜자이신 경우 본인의 건강 플랜에 문의하여 장갑을 주문하십시오. 건강 플랜 연락처 정보는 “개인 간병인을 위한 비멸균 장갑 주문 방법” 안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 Apple Health(메디케어) 비 관리 수혜자이신 경우 Health Care Authority 웹사이트 (http://www.hca.wa.gov/medicaid/dme/Documents/ffs_providers_non_sterile_gloves.pdf) 목록에 있는 DME(내구성 의료장비) 공급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 1-800-562-3022 의 의료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이 번호는 파란색 의료 서비스 카드 뒷면에 있습니다. 장갑 주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ealth Care Authority 웹사이트(<http://www.hca.wa.gov/medicaid/dme/Pages/default.aspx>)를 방문하십시오.
- 본인의 개인간병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가능한 다음 정보를 획득할 책임:
 - 개인간병인으로부터 I-9 양식을 수집해 본인의 서류철에 보관할 책임
 - 더 자세한 정보는 [Homeland Security USCIS I-9 Web Site](#) 또는 1-888-464-4218 로 전화하십시오.
- 본인의 개인간병인이 매달 DSHS 에 청구하는 근무시간 기록지를 확인하고 서명할 책임. 본인의 개인간병인은 근무시간 기록지 사본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사례매니저는 본 기록지의 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개인간병인 서비스를 종료하고 필요한 대로 다른 간병인을 선택할 책임.
- 간병인의 근무일정 정하기, 필요한 대로 대리 개인간병인을 선정 및 개인간병인이 그만둘 경우 대체할 책임.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 조세기관에 본인의 개인간병서비스 지불금을 보고할 책임:
 - 홈 및 커뮤니티 서비스(Home and Community Services) 또는 지역의 지역노인협회(AAA)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 개인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 본인의 개인간병서비스를 지불할 경우
 - 세금 정보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1-800-829-1040 으로 연락하거나 워싱턴주 고용안전국(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mployment Security), 1-888-836-1900 으로 연락하십시오.

- 다음의 경우 제 DSHS 사례매니저에게 연락합니다.
 - 본인의 개인서비스계획이나 본인의 개인간병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간병 품질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본인의 개인간병인이 서비스 비용으로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 본인의 서비스계획에 승인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 개인간병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기로 할 경우

본인의 개인간병인이 직접 DSHS 에 본인의 개인간병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지불할 것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DSHS 에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간병인이 제 부모이거나 18 ~ 21 세의 제 자녀일 경우를 제외하고 DSHS 에서 원천과세로 사회보장금과 메디케어 조세(FICA) 및 연방/주정부 실업세(FUTA/SUTA)를 보류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DSHS 가 제 개인간병인과의 계약을 종결할 경우 행정심의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사전 심사를 거쳐서 유자격자로 결정된 개인간병인을 찾기 위해 그리고 개인간병인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HCRR(Home Care Referral Registry)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워싱턴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HCRR에 1-800-970-5456 으로 또는 <http://www.hcrr.wa.gov/>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간병인은 반드시 워싱턴 주 경찰의 신원 조회와 FBI 지문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본인은 제 개인간병인의 고용주로서 다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 1) **첫 워싱턴주 신원조회 후 개인간병인을 임시 고용함.** 첫 워싱턴주 신원조회는 해당 개인에 대한 (1) 워싱턴주 경찰을 통한 전과기록, (2) 워싱턴주 법원의 데이터자료에 있는 기록, (3) 워싱턴주정부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등기 결과 등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신원조회에 따른 전국 지문 채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대 120 일까지 개인간병인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 2) **신원조회에 따른 전국 지문 채취 결과가 나온 후에 간병인을 고용함.** FBI 조회에 따른 지문채취에는 다른 주에 있는 전과기록도 조회합니다.

본인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기 앞서 지문채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간병인을 임시로 먼저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문채취 결과가 나온 후에 고용할 것인지를 본인의 사례 매니저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지문채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지문채취 결과에서 해당 간병인이 부적임자로 판결되면 본 간병인 간에 체결된 계약건은 취하되며 추후 보수가 지불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수혜자 / 법적 대리인의 서명*

날짜

수혜자 ID 번호

수혜자 / 법적 대리인의 이름(인쇄체로 기입)